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577

발의연월일: 2025. 4. 3.

발 의 자 : 임오경 · 임미애 · 신영대

김윤덕•박 정•한병도

이기헌 • 조계원 • 유준병

김재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스마트관광산업 및 일·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방식을 설명함에 있어 '인프라'의 지속적 발전, '관광인프라'의 조성 등 법률에 '인프라'라는 외국어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음.

그런데 「국어기본법」은 공문서 등을 알기 쉽고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'인프라'는 국립국어원의 표준 화 대상어이고 법제처는 『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』에서 정비 대상 외국어로 선정한 바 있음.

이에 외국어인 '인프라'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'기반시설'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7조의8제1항 및 제48조의12제1항).

법률 제 호

관광진홍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7조의8제1항 중 "인프라를"을 "기반시설을"로 한다.
제48조의12제1항 중 "관광인프라를"을 "관광기반시설을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7조의8(스마트관광산업의 육	제47조의8(스마트관광산업의 육
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	성) ①
기술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	
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	
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산업(관	
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	
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	
제공하고 관광콘텐츠· <u>인프라</u>	<u>기</u> 반시설을
<u>를</u>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	
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	
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. 이	
하 같다)을 육성하여야 한다.	<u>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48조의12(일ㆍ휴양연계관광산	제48조의12(일ㆍ휴양연계관광산
업의 육성) ① 국가와 지방자	업의 육성) ①
치단체는 관광산업과 지역관광	
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·휴	
양연계관광산업(지역관광과 기	
업의 일·휴양연계제도를 연계	
하여 <u>관광인프라를</u> 조성하고	<u>관광기반시설을</u>
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	
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	
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. 이	

 하 같다)을 육성하여야 한다.

 ②·③ (생 략)
 ②·③ (현행과 같음)